

제22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0. 5. 11.

社會建設委員會  
專 門 委 員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200호로 2020년 2월 2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회원도시 확대 및 협의회 예산 증가 등 협의회 내·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법 제158조 및 제152조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 변경

1) 개정 명칭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나. 협의회 법적 근거 조항 삽입 (안 제1조)

1) '지방자치법 제152조' 문구 삽입

다. 공동사무국 관련 조항 수정 (안 제4조)

1) 협의회장 지자체가 사무국 운영

라. 구체적인 경비사용 기준 마련(안 제12조)

1) 공동사업의 정의를 명확화

2)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사무국 업무 추진 및 운영, 회원도시 교류 및 지원 등 협의회 부담금 사용 기준을 세부적으로 명시

마. 협의회 부담금 회장 지자체 세입·세출 예산 편성 근거 마련 (안 제13조)

1)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행정협의회 부담금 세입조치 근거 조항 마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5. 검토의견

○ 본 건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유엔아동 권리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설립·운영 중인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8조에 따라 구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임.

○ 협의회 규약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규약 상 지방정부협의회 명칭을 변경하였고, 안 제12조에서는 협의회 운영 경비의 사용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협의회 부담금을 회장 자치단체 예산에 편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음.

- 따라서, 협의회 규약 개정안은 협의회 회원도시 확대에 따라 협의회 명칭과 조문을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른 협의회 부담금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본 동의안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 참 고 자 료

## 1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